

##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비교 분석>

###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얼마나 달라졌나?

- 2021년 대비 성별균형, 민간참여, 회계감사 등 8개 기준으로 조문 분석 -

경기·부산, 노동조합 추천 위원 명문화... 부산은 생활임금 정의까지, 광주는  
성별균형 비율 제한, 대전은 지역 고용 선정기준 신설  
세종은 횃수 제한·매번 의회동의 이중 통제, 서울은 횃수만 제한, 제주는 3년  
주기 재동의... 장기 위탁 통제 방식은 자치단체마다 달라, 경남은 여전히  
상임위 보고 갈음 구조  
대전·울산·경남·전북·세종, 외부 전문가 재무검증 조례상 의무화 미비...  
정보공개 항목도 자치단체별 넓이·깊이 편차 뚜렷

2026.06.02.

작성 : 김민수 책임연구원

- 2021년 3월 이후 17개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전반적으로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광역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실질적 준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 분석은 광역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책임성을 진단하는 작업임.
-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구체화된 제도화 사례가 확인됨. 경기도는 관리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명문화하였고, 부산은 조례 본문 정의 조항에 생활임금을 직접 규정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도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하였음. 대전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지역 고용 효과를 명문화하였음.  
대구·울산·충남·경북·경남은 노력 의무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는 2021년 이후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재계약·재위탁 통제 방식은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큼. 세종은 재계약 1회 제한과 매번 의회동의를 결합한 가장 강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은 재계약 횃수를 1회로 제한하되 재계약 시 의회동의 없이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고, 제주는 횃수 제한 없이 3년마다 의회 재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경남은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 보고로 의회동의를 갈음할 수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회 통제 수준이 낮은 편임.

- 성별균형 조항의 규율 방식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광주·경남·충북·세종 모두에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 **6/10** 초과 금지를 명시하여 수치 기준을 조례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세종·부산·대구·충북·제주는 성별 고려 의무를 조례에 두고 있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일반 위원회 조례의 준용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 외부 재무검증 체계의 명문화 수준에 차이가 있음. 대전·울산·경남·전북·세종 **5곳**은 독립적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재무검증을 조례상 별도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광주는 기존 외부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면서 검증 주체를 세무사·세무법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였음. 두 방식은 재정 전반 통제(회계감사) 대 개별 사업 정산 통제(결산서 검사)라는 목적과 범위의 선택 문제로,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에서 자치단체 간 차이가 확인됨. 부산은 위탁사무 현황·수탁기관·감사결과·회계감사결과·성과평가결과 등 **5대** 핵심 정보를 통합 공개하도록 별도 조항 신설하였으며, 경기도는 사업비(계약금액)까지, 대전은 성과평가 등급 및 개선과제까지 공개 항목을 구체화하였음. 대다수 자치단체는 공개 항목이 개별 조문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의 구성 다양성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자치단체 간 편차가 남아 있음. **2021년** 당시 민간참여를 적절히 보장한 자치단체는 **6곳**에 그쳤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간 위원 과반 원칙과 공무원 위원 비율 제한을 도입하였음. 경기·부산은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위원회에 명문화하여 이해당사자 참여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전·충남은 시민단체 참여 명시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의 수준은 해당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 기초자치단체 전체 민간위탁 제도 수준의 하한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분석의 의미가 있음. 제도 개선의 경로는 중앙정부의 법령 강제보다 자치단체 간 비교 정보의 공개와 수평적 학습이 자치분권의 취지에 더 부합함.

- 다만 대구의 장기 미개정, 대전·울산·경남·전북·세종의 외부 재무검증 미비, 경남의 낮은 의회 통제 수준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만을 기다리기에는 제도적 공백이 분명한 영역으로,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됨.

## 1. 분석 이유 및 기준

### 1) 분석의 필요성

-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해당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실질적 준거이자,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법적 토대임.
- 수탁기관 선정·관리·감독·성과평가·재계약 전반을 규율하는 이 조례가 어느 수준의 공공성·책임성·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는 민간위탁 서비스의 품질과 종사자 보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이나, 구체적 절차·기준·감독 방식은 각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주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를 받는 결과로 이어짐.**

### 2) 분석의 이유

- 나라살림연구소는 2021년 3월 나라살림145호(「광역자치단체별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분석을 통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확인」)를 통해 당시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바 있음.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조례 환경이 다방면으로 변화하였음.
- 법령 차원에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관련 조문 번호가 변경(제104조 → 제117조)되었고, 2023년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설치로 광역자치단체 지위·명칭도 바뀌었음.
- 조례 차원에서는 경기와 부산이 2024년 전부개정을 단행하였고, 서울·대전·전남 등도 주요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음.
- 사회적 요구 차원에서는 민간위탁 종사자 노동권 보호, 성별균형, 지역 고용, 사업비 집행 투명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음. 이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3) 분석의 기준

- **분석 대상**은 2026년 5월 현재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문 및 시행규칙임.
- **분석 기준**은 2021년 보고서의 5개 항목(사회적 가치, 재계약·재위탁 제한, 민간참여, 성과평가, 회계감사)을 유지하되, 최근 5년간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여 적정성 검토, 성별균형·제척기피, 정보공개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8개 기준으로 확장하였음.
- **평가 기호**는 2021년과 동일하게 O(구체적으로 규정)·△(간략하게 규정 또는 구체성 부족)·X(미규정 또는 미흡)로 표기하되, 조문 인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문을 별도 제시하였음.
- **평가의 성격 및 한계**와 관련하여, 본 분석은 각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본문 및 시행규칙 조문을 직접 검토한 결과에 기반하며, 조문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규율의 구체성·강제성·적용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진의 판단과 해석이 개입된 평가의견임을 전제로 함.
- 조문에 명시된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자치단체가 내부 지침·매뉴얼·행정관행을 통해 조문 이상의 수준으로 실질적 운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음.
- 다만 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민과 지방의회가 접근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례 문언의 명문화 수준 자체가 민간위탁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과 투명성을 가능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 본 분석의 기본 관점임.
- 따라서 이 보고서에 제시된 평가 결과는 법적 판단이나 행정 처분의 근거가 아니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진의 분석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개별 조례의 해석 방식이나 일반 위원회 조례·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실제 운영 수준은 평가와 다를 수 있음.

## 2. 분석 내용

### 1) 조례 제개정 현황

- 2026년 5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운용하고 있음.  
2021년 3월 이후 모든 자치단체가 개정을 거쳤음.
- 조례명 역시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여, 서울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과 전북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 경남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충남은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경북은 "사무위탁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현황                                                                                                         |                     |             |       |              |
|---------------------------------------------------------------------------------------------------------------------------|---------------------|-------------|-------|--------------|
| 자치단체                                                                                                                      | 조례명                 | 현행 최신 개정일   | 개정 형태 | 2021년 당시 개정일 |
| 서울특별시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6.01.05. | 일부개정  | 2020.12.31.  |
| 부산광역시                                                                                                                     | 민간위탁 기본 조례          | 2026.04.08. | 일부개정  | 2021.02.17.  |
| 대구광역시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021.09.30. | 일부개정  | 2018.08.10.  |
| 인천광역시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5.12.31. | 일부개정  | 2020.07.14.  |
| 광주광역시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026.02.27. | 일부개정  | 2020.06.01.  |
| 대전광역시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025.10.02. | 일부개정  | 2020.06.30.  |
| 울산광역시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2.12.29. | 일부개정  | 2020.12.29.  |
| 세종특별자치시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023.04.17. | 일부개정  | 2018.02.12.  |
| 경기도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024.07.18. | 전부개정  | 2020.11.12.  |
| 강원특별자치도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024.05.10. | 일부개정  | 2020.05.15.  |
| 충청북도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025.07.11. | 일부개정  | 2020.12.18.  |
| 충청남도                                                                                                                      |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2025.05.12. | 일부개정  | 2020.04.01.  |
| 전라남도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025.12.18. | 일부개정  | 2019.07.09.  |
| 전북특별자치도                                                                                                                   |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2023.12.08. | 일부개정  | 2020.05.29.  |
| 경상북도                                                                                                                      | 사무위탁 조례             | 2022.01.06. | 일부개정  | 2019.09.19.  |
| 경상남도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2024.05.09. | 일부개정  | 2020.05.14.  |
| 제주특별자치도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025.03.19. | 일부개정  | 2020.05.13.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2026.05./<br>일러두기 :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는 2025.01.01 울산은 2023.01.01., 전북은 2024.01.18. 경북은 2022.01.13. 임. |                     |             |       |              |

## 2) 최근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 **(경기 전부개정: 상분 위원회체계 정비 및 노동조합 추천 위원 명문화)**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부개정을 통해 관리위원회·심의위원회·수탁사무운영위원회 상분체계를 정비하고,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계속 명시(제8조②5호)하였음.
- **(부산 전부개정: 생활임금 정의 신설 및 성과평가단 설치 근거 마련)**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조례는 위탁업무 종사자를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부산은 2025년 1월 시행된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 정의 조항에 "생활임금"을 명시(제2조6호)하고, 이후 2026년 4월 일부개정을 통해 성과평가단 설치 또는 전문평가기관 위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음. 제주도는 시행규칙 제4조의2(2023.12.29. 신설)에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두어 도지사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의 조례 본문 정의 방식과는 규율의 위계와 강도에서 차이가 있음.
- **(서울·세종: 재계약 횟수 제한과 의회동의의 결합)** 서울은 2023년 재계약 1회 제한(위탁기간 3년 이내, 제12조③)을 신설하고, 2026년 1월 개정으로 위탁 종료 시 의회 상임위 보고 조항(제4조의3⑥)을 추가하였음. 세종 역시 제14조①에 위탁기간 3년에 1회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위탁·재계약 시에도 매번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임(제8조①②). 두 자치단체 모두 재계약 횟수 제한과 의회동의를 결합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의회 통제 강도에서는 차이가 있음.
- **(대전: 지역 기반 역량·지역 고용 효과 선정기준 추가)** 대전은 2025년 10월 개정으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 실적 등 지역 기반 역량"(제9조①5호)과 "노동자 중 시 거주자 비율 및 채용계획 등 지역 고용 효과"(제9조①6호)를 신설하였음.
- **(광주: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 전환)** 광주는 2026년 2월 개정으로 기존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편하고 용어 정의(제2조6호)를 신설하였음. 이는 개별 위탁사업의 정산·결산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검증 주체를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서 세무사·세무법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 것임. 외부 회계감사를 유지하는 방식과의 우열을 단정하기보다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에 맞는 검증 수단을 선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전남: 재위탁·재계약 의회동의 신설)** 전남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의회동의 조항(제4조의2)을 신설하였음. 이번 개정으로 재계약·재위탁에 대한 의회 통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였음.
- **(충북: 연속 민간위탁 4회차 의회동의 신설)** 충북은 2024년 5월 개정으로 해당 사무를 연속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제5조②)하였음.
- **(강원·전북: 자치도 설치에 따른 명칭 정비)**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및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조례명과 조문 내 명칭이 일괄 변경되었음. 제도 내용의 실질적 변화는 없으며 조문 체계 정비가 이루어진 사안임.
- **(대구: 2021년 이후 개정 없음)** 대구는 2021년 9월 일부개정 이후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이 기간 동안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제도 환경 변화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3) 항목별 비교 분석

#### 3\_1) 종합 평가표

- 다음의 8개 분석 기준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조문을 직접 대조·확인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임. 평가는 조문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규율의 구체성·강제성·적용 범위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선언적 규정과 실질적 의무 규정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음.
- O는 타 자치단체 대비 **명문화 수준이 두드러진** 조항을 포함한 경우이거나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는 간략하게만 규정하거나 일부에 한정된 경우, X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를 나타내며, 이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의 조문 검토에 기반한 평가 의견임.
- 개별 조례의 해석 방식이나 일반 위원회 조례·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실제 운영 수준은 평가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사회적 가치(노동자 권익보호)** :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노동조건 보호를 조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규율하는지를 봄. 선정기준에 노동조건 항목이 있는지, 협약 체결 시 노동조건 이행이 포함되는지, 생활임금 연계·노동조합 추천 위원 등 구체적 제도화 수준까지 포함하여 평가함.

- **재계약·재위탁 제한** : 위탁기간 만료 후 동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또는 새로운 기관 선정(재위탁) 시 의회동의 강도, 허용 횟수 제한, 재동의 주기 등을 평가함. 장기 반복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 수준이 핵심 기준임.
- **민간참여(위원회 구성 다양성)** : 수탁기관 선정·심의·평가 위원회에 시민단체·노동조합·주민·의원 등 민간의 참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봄. 공무원 위원이 과반 이하인지, 민간 추천 주체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임.
- **성과평가** : 위탁기간 만료 전 수탁기관의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절차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봄. 평가 실시 의무, 전문평가기관 위탁 가능 여부, 평가 결과의 재계약 연계 및 공개 여부까지 포함하여 평가함.
- **회계감사** :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는 제도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봄. 외부 감사인 지정 의무, 기준금액, 결과 제출 및 의회 보고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임. 광주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처럼 외부 감사 외 다른 검증 방식을 도입한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함.
-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 해당 사무가 위탁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봄. 공공성·경제적 효율성·민간 전문성 활용 가능성·성과 측정 용이성 등 검토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검토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지가 판단 기준임.
- **성별균형** :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조례에 있는지를 봄. 단순 고려 권장에 그치는지, 비율 제한을 명시하는지, 적용 대상 위원회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X를 구분함.
- **정보공개** : 위탁사무 현황·수탁기관 정보·성과평가 결과·감사 결과·회계감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가 의무화하고 있는지를 봄. 공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의무 공개인지 임의 공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

| 종합 평가표 |        |            |      |      |      |        |      |      |
|--------|--------|------------|------|------|------|--------|------|------|
| 자치단체   | 사회적 가치 | 재계약·재위탁 제한 | 민간참여 | 성과평가 | 재정통제 | 적정성 검토 | 성별균형 | 정보공개 |
| 서울     | ○      | ○          | ○    | ○    | ○    | ○      | X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종합 평가표                                                                                              |           |                |      |      |      |           |      |      |
|-----------------------------------------------------------------------------------------------------|-----------|----------------|------|------|------|-----------|------|------|
| 자치단체                                                                                                | 사회적<br>가치 | 재계약·재<br>위탁 제한 | 민간참여 | 성과평가 | 재정통제 | 적정성<br>검토 | 성별균형 | 정보공개 |
| 대구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X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X    | ○         | X    | ○    |
| 울산                                                                                                  | △         | ○              | ○    | ○    | X    | ○         | X    | △    |
| 세종                                                                                                  | ○         | ○              | △    | ○    | X    | ○         | ○    | △    |
| 경기                                                                                                  | ○         | ○              | ○    | ○    | ○    | ○         | X    | ○    |
| 강원                                                                                                  | ○         | ○              | ○    | ○    | ○    | ○         | X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X    | △    |
| 전북                                                                                                  | ○         | △              | ○    | ○    | X    | ○         | X    | △    |
| 전남                                                                                                  | ○         | ○              | ○    | ○    | ○    | ○         | X    | △    |
| 경북                                                                                                  | △         | ○              | ○    | ○    | ○    | ○         | X    | △    |
| 경남                                                                                                  | △         | △              | ○    | ○    | X    | ○         | X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상세 규정 및 타 자치단체 대비 우수한 조항 포함 / △: 간략 또는 일부 규정 / X: 미규정·미흡<br>조례의 조문을 기준으로 연구진의 판단과 해석이 개입된 평가의견임. |           |                |      |      |      |           |      |      |

### 3\_2) 사회적 가치(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 용어의 사용 및 성별 균형)

- **(노동자 권익 보호의 적극적 도입)**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보호를 조례에 반영하는 자치단체가 크게 늘었음. 2021년 당시 관련 조항을 갖춘 곳이 7곳에 그쳤으나, 2026년 현재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선정기준·협약 조항·수탁기관 의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제도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선정기준 반영, 위원회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참여, 생활임금 연계가 그것임.
- 선정기준 측면에서는 서울이 수탁기관 선정기준(제7조①4호)에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반영하고 협약 조항(제15조⑨)에 노동조건 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하였음. 대전은 2025년 개정으로 "지역 고용 효과"(제9조①6호)를 선정기준에 추가하였음. 전북은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에게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제5조③) 제출을 의무화하여 선정 단계부터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였음.

- 위원회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참여 측면에서는 **경기(O)**가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제8조②5호)을 명시하여 관리·감독 단계에서 노동 측 참여를 제도화하였음.
- **부산(O)**은 선정심의위원회(제12조②4호)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선정 단계에서 노동 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두 자치단체는 노동조합 추천 위원이 포함되는 위원회의 성격이 관리위원회(경기)와 선정심의위원회(부산)로 다르다는 점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함.
- 생활임금 연계 측면에서는 **부산(O)**이 조례 본문 정의 조항(제2조6호)에 "생활임금"을 직접 명시하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10조를 준용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의무적으로 마련한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임. 제주는 시행규칙 제4조의2(2023.12.29. 신설)에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두어 도지사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본문에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 근거를 명시한 부산과는 규율의 위계와 강도에서 차이가 있음.

|                                                                                                        |
|--------------------------------------------------------------------------------------------------------|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제5호 (2025.1.1. 시행)                                                             |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제6호 (2026.4.8. 기준)                                                               |
|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10조에서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 (2023.12.29. 신설)                                                      |
| (생활임금의 장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위탁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반면 대구·울산·충남·경북·경남은 위탁기관 의무로 단순 노력 의무만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대구는 2021년 이후 추가 개정이 없어 최근의 제도화 흐름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근로자’와 ‘노동자’ 용어의 혼재)** 사회적 가치 조항의 내용적 분석과 함께, 조례 용어(‘근로자’ 대 ‘노동자’)의 혼재 현황도 살펴봄. 용어의 선택은 조문의 내용적

수준과는 구별되나, 조례 전반의 정합성과 입법 의지의 일관성을 가늠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 최근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조례 용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개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전반에 걸쳐 두 용어가 혼재하는 상황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조례 전반에 걸쳐 '근로자'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자치단체**로는 경북·세종·전남이 있음. 경북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종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정기준·협약 체결 조항에도 "근로자의 고용·근로 조건"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음. 전남은 수탁기관 의무 조항에서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일 조례 내에서 '근로자'와 '노동자'를 혼용하는 자치단체**로는 대구·부산·광주·대전이 있음. 대구는 수탁기관 의무 및 위탁계약 체결 조항에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이라고 규정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두 용어가 혼재되어 있음. 부산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시의회 동의안에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명시하였으나, 수탁기관 의무 조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 표현이 잔존하고 있음. 광주는 수탁기관 의무 조항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근로자'를, 조건을 지칭할 때는 '노동조건'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혼합 표현을 쓰고 있음. 대전은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는 '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분류하는 조문에서는 "근로자 복지" 관련 시설로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조례 본문은 '노동자'로 개정하였으나 시행규칙에 '근로자'가 잔존하는 자치단체**로는 강원·충남이 있음. 강원은 2020년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를 통해 조례상 표현을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일괄 개정하였으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수탁기관 선정 조문에는 여전히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표현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 충남은 조례 본문에서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표현이 잔존하고 있음.

- 사람은 '노동자'로 명시하였으나 조건을 규율할 때는 법률상 용어인 '근로조건'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치단체로는 경기·인천·전북이 있음. 경기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하고 있음. 인천은 수탁기관 계약체결 및 지도·점검 조항에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북은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용어의 선택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를 넘어 해당 자치단체가 위탁사무 종사자를 어떤 법적·사회적 맥락에서 인식하는지를 반영하는 사항임. 조례 본문과 시행규칙 간, 또는 동일 조례 내 조문 간 용어가 불일치할 경우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가 필요함.
- **(성별균형 규정의 명확성 차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성별균형 조항의 명확성을 보면 이 평가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원칙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도 이 일반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조임.
- 실제로 자치단체의 조례들은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거나, 조례 본문에 성별균형 조항을 직접 포함하는 방식 중 하나를 취하고 있음. 어느 방식이든 성별균형의 원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간위탁 조례에 성별균형 규정을 명확하게 두는 것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함.
-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는 위원회를 2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인 표준 구조라는 사실임.
- 서울(운영평가·적격자심의), 경기(관리·심의), 부산(관리·선정심의), 대구(운영·심의), 제주(심의·선정), 충북(관리·선정심사) 등이 모두 이 이원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공통 구조 위에서 각 자치단체가 성별균형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남.
- 서울·경기·인천·충남·경북 등은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두 위원회 모두에 성별균형 조항이 없음. 부산·대구 2개 위원회 모두에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두고 있고, 세종은 두 위원회 모두에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율 기준이 없는 고려 의무 수준임. 제주·충북은 2개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두고 다른 한 곳에는 아예 조항이 없음.

- 이에 반해 **광주(O)** 는 운영심의위원회(제9조②)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제15조②) **두 위원회 모두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명확한 수치 기준을 조례 본문에 직접 규정한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임**.
- 고려 의무에서 나아가 측정 가능한 비율 상한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타 자치단체와 구별됨. 그 외 11개 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조례 본문에 관련 규정이 없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성별균형)**

(운영심의위원회 제9조②)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정심의위원회 제15조②)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_3) 재계약·재위탁 제한 및 일몰제

- 장기 반복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독점화·관행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수준은 자치단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의회동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통제 방식은 크게 재계약 횟수 제한형, 매번 의회동의형, 정기 재동의형, 상임위 보고 원칙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계약 횟수 제한과 매번 의회동의를 동시에 규율하는 자치단체는 **세종(O)** 임. 재계약을 1회(3년 이내)로 제한하여 동일 수탁기관과의 계속 계약을 최대 6년으로 막으면서(제14조①), 재계약 시에도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제8조①②)를 갖추고 있음. 횟수 제한과 의회 통제를 동시에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구조임.
- **서울(O)** 역시 재계약을 1회(3년 이내)로 제한(제12조③)하고 있으나,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동의를 갈음**할 수 있어 세종에 비해 의회 통제 강도가 낮음. 재위탁과 위탁사무 중요내용 변경 시에는 의회동의를 필요하며, 2026년 1월 개정으로 위탁 종료 시 상임위 보고 조항이 추가되었음.
- 재위탁·재계약 시 매번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로는 **대전·전남·전북·충남**이 있음. 대전은 제8조①에서 "재위탁·재계약 또한

같다"고 명시(2025.4.11. 개정)하였고, 전남은 2024년 10월 재위탁·재계약 의회동의 조항을 신설(제4조의2①)하였음. 전북은 제4조②에서 재위탁·재계약 포함 매번 의회동의를 규정하고 있음. 충남은 매번 의회동의와 함께 시행규칙 제8조에서 3회차 협약 종료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가장 복합적인 통제 구조를 갖추고 있음.

- **경북(O)** 은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통제 수준을 이원화하고 있음. 재계약의 경우 매번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며(제6조③), 재위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되 매 2회차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임. 동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강하게 통제하면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재위탁)에는 다소 유연한 통제를 적용하는 방식임.
- **부산(O)** 은 원칙적으로 재위탁·재계약 시 매번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제7조①②)이나, **연간 3억원 이하 사무 또는 국가 보조 전액 사무는 예외**로 상임위 보고를 갈음으로 인정하고 있음. 다만 이 예외 사무도 의회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시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 사무에 대한 장기 통제 장치를 별도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6년 주기 재동의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정기 주기형 자치단체도 있음. **제주(O)** 는 재위탁·재계약 시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연속 민간위탁 시 의회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에는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제7조②)임. 의회의 정기적 견제 기회가 보장되나, 재동의를 계속 받으면 동일 수탁기관과 이론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 상한형과는 구조적으로 다름. **강원**은 3회차마다, **충북**은 4회차부터 의회 재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구·인천·경기·울산·광주는 6년 경과 시 의회 재동의를 받는 구조로 통제 수준이 유사함. 다만 **광주(O)** 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1회에 한정(제20조①)하고 있어, 사실상 6년 후에는 재위탁이 불가피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6년 경과 후 의회동의 조항이 재계약 횟수 제한과 맞물려 실질적인 수탁기관 교체 통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다른 4개 자치단체와 구별됨.
- 반면 **광주** 의 재계약 시 상임위 보고 갈음 구조, **서울** 의 재계약 상임위 보고 갈음 구조처럼 원칙적으로 상임위 보고가 가능한 자치단체는 의회 통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경남(△)**은 재위탁·재계약 모두 상임위 보고로  
 같음이 가능하고 연속 위탁에 대한 추가 제한도 없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회 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재계약 및 재위탁의 의회 통제 강도 비교              |                    |                                                                         |
|-------------------------------------|--------------------|-------------------------------------------------------------------------|
| 통제 강도                               | 자치단체               | 재계약·재위탁 제한 방식                                                           |
| 최고 엄격                               | 세종                 | 재계약 1회 제한(3년 이내) + 재계약 시에도<br>매번 의회동의                                   |
| 매번 의회동의형                            | 충남·대전·전남·전북        | 충남: 매번 의회동의 + 3회차 종료 후<br>일몰제 원칙 / 대전·전남·전북:<br>재위탁·재계약 시 같음 없이 매번 의회동의 |
| 재계약 매번 +<br>재위탁 주기형                 | 경북                 | 재계약은 매번 의회동의, 재위탁은 기본<br>상임위 보고·매 2회차마다 의회동의                            |
| 횟수 제한형,<br>재계약 상임위<br>보고            | 서울                 | 재계약 1회 제한(3년 이내), 단 재계약 시<br>상임위 보고 같음 / 재위탁·중요변경 시<br>의회동의             |
| 원칙 매번 동의,<br>소액 예외형                 | 부산                 | 3억원 초과 사무는 매번 의회동의 / 3억원<br>이하·국가보조 전액 사무는 예외, 단 6년<br>경과 후 의회동의        |
| 정기 주기형                              | 제주·강원·충북           | 제주: 상임위 보고 원칙, 3년마다 의회<br>재동의 / 강원: 3회차마다 의회 재동의 /<br>충북: 4회차부터 의회 재동의  |
| 장기 주기형                              | 대구·인천·경기·울산·광<br>주 | 6년 경과 시 의회 재동의                                                          |
| 통제 미흡                               | 경남                 | 재위탁·재계약 시 예외 없이 상임위 보고로<br>같음 가능, 연속 위탁 추가 제한 없음                        |
| 조례의 조문을 기준으로 연구진의 판단과 해석이 개입된 평가의견임 |                    |                                                                         |

### 3\_4) 민간참여(위원회 구성 다양성)

- **(시민사회 및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의 확대와 제도화)** 민간위탁 선정·심의·평가  
위원회에 시민단체·전문가·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  
확보의 핵심임. 2021년 당시 민간참여를 적절히 보장한 자치단체는  
6곳(울산·전남·서울·경북·경남·제주)에 그쳤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간  
위원 과반수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
- 공무원 위원 비율 제한 측면에서 단순히 과반 이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구·광주·충남·경북 등은 4분의 1 이하로, 세종·충북·전남·제주 등은 3분의 1  
이하로 공무원 위원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있음. 나아가

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제주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하여 관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 민간 위원회 자격 범위에서도 진일보한 변화가 확인됨.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 추천 위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고 있음.
- **경기(O)**는 관리위원회(제8조②)에 시민단체·도의원·전문가는 물론 노동조합 추천 위원까지 포함하여 가장 다원적인 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고 있음.
- **부산(O)** 역시 선정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하고 있음. 두 자치단체는 민간 참여의 범위를 단순 시민사회를 넘어 수탁기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해당사자 영역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확인되지 않는 독자적인 조항임.**
- 서울과 강원 역시 위원회 구성에 공인노무사·시민단체 추천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의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였음.
- 반면 **대전·충남**은 위원회 구성에 '전문가' 등 포괄적 명칭만 사용할 뿐 시민단체 참여 명시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함. **세종**은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는 시민단체를 명시하였으나, 전반적 운영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로만 규정하여 위원회별로 편차가 존재함.

### 3\_5)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2014년 서울이 최초 도입한 이후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었으며, 2026년 현재 **17개 자치단체 모두 적정성 검토 조항을 갖추고 있음.** 검토 항목은 공공성·경제적 효율성·민간 전문지식 활용 가능성·성과 측정 용이성·관리 투명성·시장여건 등으로 상당 부분 표준화되어 있음.
- 최근 개정에서는 검토 항목을 보완하거나 검토 결과의 후속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의 변화가 확인됨. 경기는 2024년 전부개정에서 기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에 **"지속성"을 추가(제6조②)**하여 장기적 관점의 공공성 판단 기준을 강화하였음. 대전은 2025년 **추진계획 수립 의무를 별도 조문(제7조)으로 신설**하여 적정성 검토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적정성 검토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행정 절차와 연계한 사례로 주목됨.

- **17개 자치단체 모두 성과평가 조항을 갖추고 있음.** 2021년 당시 전북이 성과평가 조항을 명확히 두지 않았으나, 현재는 전북을 포함한 전체 자치단체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서울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제18조)하고 있음. **부산(O)** 은 2026년 4월 개정으로 성과평가단 설치 또는 전문평가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제4조②③④)하고 평가위원 수당 지급 근거까지 마련하여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였음.
- 반면 충남은 성과평가 대상을 **3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위탁사무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임.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재위탁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과평가가 단순 점검을 넘어 위탁 지속 여부 결정과 연계되는 실질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3\_6) 회계감사

- **(회계감사 규정의 현황과 제도적 쟁점)**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외부에서 검증하는 장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 대전·울산·경남·전북 4곳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 감사 조항만을 두고 있음.
- 이것이 이들 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의 회계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 다만 조례상 '감사'는 그 목적·대상범위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통상적 해석이며, 실제 입법·운영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내부행정감사·회계감사는 구분되어 규율되는 것이 보편적 구조임.
- 이 4곳은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등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재무검증을 조례상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나머지 자치단체는 외부 회계감사와 사업비 결산서 검사 두 방식으로 나뉨. 두 방식은 우열의 문제라기보다 재정 전반 통제(회계감사) 대 개별 사업 정산 통제(결산서 검사)라는 목적과 범위의 선택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 중 광주(O)는 기존 외부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조례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를 직접 정의(제2조6호)하여 통제의 초점을 개별 사업 단위의 정산·결산 검증으로 명확히 하였음. 나아가 검증 주체를 기존의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서 세무사·세무법인까지 확대 인정하여 전문직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실무 선택의 폭을 넓혔음.

- 외부 회계감사를 유지하는 자치단체와의 우열을 단정하기보다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에 맞는 검증 수단을 조례에 명확히 정의하고 검증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임.

| 회계 감사 기준의 비교                        |                                       |         |    |
|-------------------------------------|---------------------------------------|---------|----|
| 자치단체                                | 회계감사 방식                               | 기준금액    | 평가 |
| 서울                                  | 외부 회계감사 (외부 감사인 사전 지정, 규칙으로 절차 세부 규정) | 금액기준 없음 | O  |
| 광주                                  |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 (전문직 다변화 및 용어 정의 신설)   | 금액기준 없음 | O  |
| 강원·전남                               | 외부 회계감사                               | 금액기준 없음 | O  |
| 부산·대구·인천·충북·제주·경기                   |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10억원 이상 | O  |
| 충남                                  |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5억원 이상  | O  |
| 경북                                  | 외부 회계감사 (3억원 이하 제외)                   | 3억원 초과  | O  |
| 대전·울산·경남·전북·세종                      | 별도 회계/결산 검사 조항 없음 (일반 행정감사로만 규정)      | -       | X  |
| 조례의 조문을 기준으로 연구진의 판단과 해석이 개입된 평가의견임 |                                       |         |    |

### 3\_7) 정보공개

-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탁기관 명칭·계약금액·성과평가 결과·감사 결과 등의 통합적 공개가 필수적임. 정보공개 수준과 방식에 있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뚜렷한 편차를 보이며, 이 차이는 **공개의 '넓이'(정보의 포괄성·접근성)와 '깊이'(정보의 질·실질적 감시 가능성)** 두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 **공개의 넓이** 측면에서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선정 조항에, 성과평가 결과는 평가 조항에 각각 흩어져 규정하는 파편적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시민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반면 **부산(O)**은 조례에 '정보공개(제31조)'라는 독립된 통합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사무 현황·수탁기관·감사결과·회계감사결과·성과평가결과 등 5대 핵심 정보를 한곳에 명문화하였음. **광주** 역시 '위탁사무에 대한 정보공개 등(제30조)'이라는 통합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통합 조항의 유무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 수준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냄.
- **공개의 깊이** 측면에서도 자치단체 간 격차가 확인됨.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정도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 감시나 비위 적발에는 한계가 있음. 반면 **명문화 수준이 높은** 자치단체들은 공개 정보의 항목과 범위를 조례에 직접 열거하여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대구**는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감사결과(제28조)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제하여 적발된 문제점과 행정조치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경기**는 수탁기관 명칭뿐 아니라 사업기간과 사업비(계약금액)까지 공개하도록 구체화하여 재정 투명성의 깊이를 더하였음. **대전**은 성과평가 결과 공개 시 주요 성과·개선과제·평가등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시민이 수탁기관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결국 대다수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문이 행정기관의 형식적 결과 통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부산·광주·대구·경기·대전의 조문은 정보공개를 **시민과 의회가 수탁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그 넓이와 깊이의 차이는 유의미함. 민간위탁 제도의 실질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정보공개 의무 조항의 신설과 공개 정보 내용의 구체적 명문화가 병행되어야 함.

###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민간위탁은 행정의 책임을 이전하는 행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이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나, 위탁이 이루어지는 순간 서비스 품질 관리의 주된 책임은 공공에서 수탁기관으로 이전되고, 그 이전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은 형식적 외피만 남은 채 실질은 비워지게 됨.
-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위탁기간의 적정성, 성과에 대한 책임, 종사자 처우,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은 어느 것도 선언만으로 담보되지 않음. **이것들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며, 조례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탁은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실질적 준거)**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 조례와 독립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광역의 조례가 기초의 조례에 구조·내용·수준에 걸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사실임.
- 광역이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관리위원회에 포함시키면 기초도 유사한 방향을 검토하고, 광역이 성별균형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초에서도 이 논의는 지체됨. 광역이 사회적 가치를 조례 본문에 선언하지 않으면, 기초는 그보다 높은 기준을 먼저 채택하기 어려운 정치적·행정적 맥락이 형성되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광역 조례의 수준은 단순히 해당 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할 기초자치단체 전체의 민간위탁 제도 수준의 하한을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임. 이것이 이 분석이 광역 조례에 집중하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함.
- **(경기·부산·광주·대전의 구체화된 조항 반영)**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경기의 관리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위원이 명문화되어 있고, 부산은 선정심의위원회에도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시켰음. 부산은 나아가 조례 본문에 생활임금을 용어 정의로 규정하고, 민간위탁기관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음. 광주는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율 제한을 두 개 위원회 모두에 적용하고 있음. 대전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지역 고용 효과를 명시한 사례임. **이 조항들은 조례가 행정 효율만이 아니라 노동, 성평등, 지역경제라는 가치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진전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제도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대구는 2021년 이후 추가 개정이 없어 최근의 제도화 흐름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전·울산·경남·전북은 독립적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재무검증을 조례상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경남은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 보고로 의회동의를 갈음할 수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장기 위탁에 대한 의회 통제 수준이 낮은 편임.
- 이러한 격차는 주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를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함.
- 향후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외부 재무검증 체계 명문화, 성별균형 규정 도입, 재계약·재위탁 통제 강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재무검증을 별도 조문으로 두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조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성별균형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이미 공공기관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 원칙이 민간위탁 조례에도 명확한 조문으로 직접 규정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임. 재계약 횟수 제한·주기적 의회 재동의 등은 수탁기관의 장기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례임.

- 이 세 가지 사항은 자치입법권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민간위탁 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공공성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과 검토가 요청됨.
- (타 자치단체의 조례의 중요 조항의 참고) 광역자치단체 조례 준비를 위한 경로는 중앙정부의 강제보다 자치단체 간 수평적 학습과 경쟁이 더 적합함. 행안부 모범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상향 강제하는 방식은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다양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제도화를 억제할 수 있음.
- 각 자치단체는 재정 규모·위탁사무의 성격·지역 노동시장·시민사회 역량 등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자치단체의 **명문화 사례**가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분석에서 확인된 구체화된 조항들—경기·부산의 노동조합 추천 위원, 부산의 생활임금 정의, 광주의 성별균형 비율 제한, 서울·세종의 재계약 횟수 제한, 대전의 지역 고용 선정기준—은 다른 자치단체가 그대로 따라야 할 기준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재정 조건에 맞게 도입 방식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입법 사례임.
- 자치단체 간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부 정비 압력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식이 중앙정부 강제 없이도 민주적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로이며,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분석이 그 출발점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함.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문의 : 김민수 책임연구원 010-4253-1775  
E-mail :metisome@gmail.com

---



---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정 및 정책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생각을 담아 발행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나라살림레터 구독 신청을 해주십시오. [구독 신청하기 클릭!](#)

---